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마포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자치행정과

(2018. 3. 5.)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유 준 상 ]

# 마포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안 건 명

- 마포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8년 2월 20일(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8년 2월 22일(목)

##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5. 제안이유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마을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네트워크 형성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 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마을사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 받도록 하는 것임.

## 6.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3년

나. 위탁업무: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에 관한 사무

- 마을자치센터의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원
- 마포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및 사무
-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체계 구축
- 시·구·동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지역자원 개발

다.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라. 수탁기관 선정주체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별도구성)

마. 소요예산: 510,542천원(시비: 500,542천원, 구비: 10,000천원)

바. 세부추진일정

- 공개모집 공고 : 2018. 3. 23. ~ 4. 6.
- 신청서 접수 : 2018. 4. 9. ~ 4. 11.
- 선정심사 : 2018. 4. 16. ~ 4. 20.(기간 중 1일)
- 심사결과 발표 : 2018. 4. 23.
- 협약체결 : 2018. 4. 27.
- 협약업무 개시 : 2018. 6월

## 7. 검토의견

### ○ 본 동의안은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활동 지원, 주민의 자치역량 제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네트워크 강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마을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마을사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 받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으로는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업무는 마을자치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시행,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지원,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에 관한 사무임.

### ○ 검토의견으로는

민선 지방자치는 1995년 시작으로 23년 동안 주민이 직접 자치 단체장을 선출하여 시작되었지만 주민자치사무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 주도로 추진되어 온 결과,

### ○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활동은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번 마을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맞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만큼 주민들의 자치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런 제도상 취지에도 불구하고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의 성패는 얼마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선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투명성 제고 등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